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업무 지침

2022. 08. 09 제정

2023. 05. 01 개정

2023. 08. 21 개정

2024. 06. 10 개정

2024. 12. 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4-46조의 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케이씨지아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예탁금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업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탁금이용료'란 고객이 종합계좌 예수금계정에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회사가 이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을 말한다.
3. '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영업일'이란 한국증권금융의 영업일로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대상은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3개월 일평균 예탁금이 50만원 초과인 계좌로 한다. 단, 3개월 일평균 예탁금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① 예탁금이용료의 정기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지급기간 : 이용료 지급대상 고객예탁금의 일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지급한다.
 2. 지급일 : 예탁금이용료 지급월(1,4,7,10월)의 매월 둘째 일요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한다.
 3. 지급방법 : 지급일 업무개시 전에 코스콤에서 계좌별로 예탁금이용료를 계산하여 제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해당 종합계좌 예수금으로 일괄 지급 처리한다.
- ② 수시지급 : 종합계좌의 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대상계좌의 최종지급일로부터 계좌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계좌폐쇄일에 당해 예탁금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담당 임원의 승

인과 경영관리본부장의 합의를 받아 매입확정일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예탁금이용료율 산정)

-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 및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 평균요율 이상으로 결정한다.
 1. 예금자보험료
 2. 지급결제 관련 비용
 3. 전산비
 4. 인건비
 5. 감독분담금
 6. 기타 회사가 예탁금이용료 관련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 ② 회사는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 평균요율을 매 분기말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되는 증권사 자산순위 상위 10개사 기준의 고객예탁금 금액구간별 이용료율 단순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계산방법) 예탁금이용료 지급액은 일평균적수에 이용료율 및 대상일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예탁금 이용료 지급액 = 일평균적수 주1) * 이용료율 * 대상일수 주2) / 365

주1) 일평균적수 : 일별예탁금 적수의 합 / 대상일수

주2) 대상일수 : 직전 지급일로부터 금회 지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 ① 집합투자증권 판매담당 부서장(팀장)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적정성을 분기 1회 이상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내부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탁금이용료율의 재산정 검토를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내부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심사위원회)

- ① 위원장은 집합투자증권 판매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판매담당 부서장(팀장)이 된다.
- ②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준법감시인), 경영관리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매분기 종료 후 1개월이내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의 개최 요구 시,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검토 보고서로 재산정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다.

⑤ 간사는 제3항내지 제4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게시)

-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의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당사의 홈페이지와 금융투자상품의 온라인거래를 위한 메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및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역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의 기간동안 이 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실질수익률 잔고 통보등의 통지 시 투자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9일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1일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0일 시행한다.

제 2 조 (명칭변경)

이 규정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지침”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업무 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시행한다.